

약관공시사항

□ 기본사항

개정일	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25-04-29	2025-06-01	판매중	적용

□ 신구조문대비표 -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16조[면책] ① ~ ③ <생략>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 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생략>	제16조[면책] ① ~ ③ <좌동>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 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⑤ <좌동>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 약관 등 "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 약관 등 "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 약관등의 개정이 거래처에 유리한 경우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1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u>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u> 1.~6. <생략> ③~⑤ <생략>	<u>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거래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u> <u>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u> ② 은행은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u>다만,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u> 1.~6. <좌동> ③~⑤ <좌동>
--	--	---